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3174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. 03. 30.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명	의안번호	발의자 (제출자)	회부일	회의정보	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	3059	김창원 의원	'22.1.25.	상정 · 심사	제30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'22.3.30.)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	3069	김평남 의원	'22.1.25.	상정 · 심사	제30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'22.3.30.)

-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22.03.30.)는 위 2건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건축공사에 따른 흙막이 설치 시 실시간 위험을 인지하는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을 도입하여 공사현장의 붕괴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
-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정비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흙막이 계측관리를 정의하고 스마트 계측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(안 제17조의2 신설),
- 나.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정비대상 용어인 '육안점검'을 '육안(맨눈)점검'으로 개정함(안 제49조제4항).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흙막이 계측관리) ① 법 제41조에 따른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흙막이 계측관리는 스마트 계측으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“흙막이 계측관리”와 “스마트 계측”은 다음을 말한다.

1. 흙막이 계측관리: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,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하는 오차나 설계,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,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
2. 스마트 계측: 센서 등 측정 기구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로써 통신, 데이터 처리, 의사결정지원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이 결합된 계측기법

제49조제4항 중 “육안점검”을 “육안(맨눈)점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7조의2(흙막이 계측관리) ① <u>법 제41조에 따른 토지 굴착 부 분에 대한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흙막이 계측관리는 스마 트 계측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의 “흙막이 계측관리” 와 “스마트 계측”은 다음을 말 한다.</p> <p>1. 흙막이 계측관리: <u>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,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하는 오차 나 설계, 시공의 오류를 보완 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,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</u></p> <p>2. 스마트 계측: <u>센서 등 측정 기구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 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로서 통신, 데이터 처리, 의사결정지원기능 등 복 합적인 기능이 결합된 계측기 법</u></p>
<p>제49조(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· 운영) ① ~ ③ (생략)</p>	<p>제49조(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·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6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 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.

④ -----
----- 육안(맨눈)점검-----

-----.